

Ⅱ-1. 수질환경기준

Ⅱ - 1 - 1. 주요 수질 측정 지표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Biochemical Oxygen Demand)

- 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mg/ℓ 또는 ppm단위로 나타낸 것
- 분해과정은 제1단계의 탄소계 산소요구량(유기물의 산화가 끝날 때 까지 소비되는 산소량)과 제2단계의 질소계 산소요구량(질소화합물의 산화가 끝날때까지 소비되는 산소량)으로 구분
- 보통 20°C 에서 5일간 소비되는 산소량이 사용되며, BOD_5 로 표시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Chemical Oxygen Demand)

- 수중의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화제의 양을 산소의 양으로 환산한 것으로 폐수내의 유기물에 대한 간접측정방법
- COD실험용 산화제는 중크롬산카리($\text{K}_2\text{Cr}_2\text{O}_7$)와 과망간산칼륨(KMnO_4)이며, 중크롬산카리가 산화력이 강하고 재현성이 좋으므로 처리장 설계시에는 중크롬산카리에 의한 COD값이 바람직
-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공정시험법DMS 과망간산칼륨법임.
- COD측정시간은 2시간 정도이며 BOD값을 모를때 COD실험 가능

□ 용존산소(DO : Dissolved Oxygen)

-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농도로서 단위는 mg/ℓ 또는 ppm을 사용
- 깨끗한 하천은 DO가 거의 포화값이며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 감소
- 일반적인 물고기들은 DO가 계속해서 $4\sim 5\text{ppm}$ 이하이면 생존 불가능

□ 부유물질(SS : Suspended Solids)

- 물에 녹지 않고 수중에 현탁되어 있는 유기물과 무기물을 함유하는 고형물질이며, 시료를 공극이 0.1μ 인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시킬 때 여과되지 않는 부분임

Ⅱ-1-2. 수질환경기준

□ 하 천(River)

구 분	등 급	이용목적별 적용 대상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g/ℓ)	부유물질량 (SS)(mg/ℓ)	용존산소량 (DO)(mg/ℓ)	대장균군수 (MPN/100ml)
생활 환경	I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II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III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IV	공업용수 1급 농업용수 1급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V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8.0	10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이상	-
사람 의 건강 보호	전수 역	카드뮴(Cd) : 0.01mg/ℓ, 비소(As) : 0.05mg/ℓ,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 : 0.1mg/ℓ 이하, 6가 크롬(Cr ⁺⁶) : 0.05mg/ℓ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mg/ℓ 이하					

- 비고 : 1. 수산용수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 호 소(Lakes)

구 분	등 급	이용목적별 적용 대상	기 준						
			수소이 온농도 (pH)	화 학 적 산소요구량 (BOD) (mg/ℓ)	부유물질량 (SS) (mg/ℓ)	용 존 산소량(DO) (mg/ℓ)	대장균군수 (M P N / 100ml)	총인 T-P (mg/ℓ)	총질소 T-N (mg/ℓ)
생 활 환 경	I	상수원수 Ⅱ 자연환경보 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0.010이하	0.200이 하
	II	상수원수 Ⅲ 수산용수 Ⅱ 수 영 용 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0.030이하	0.400 이하
	III	상수원수 Ⅳ 수산용수 Ⅲ 공업용수 Ⅱ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0.050이하	0.600 이하
	IV	공업용수 Ⅳ 농 업 용 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0.100이하	1.0이하
	V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 등 이 떠있지 아니할 것	2이상	-	0.150이하	1.5이하
사람의 건 강 보 호	전수 역	카드뮴(Cd) : 0.01mg/ℓ, 비소(As) : 0.05mg/ℓ,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 : 0.1mg/ 이하, 6가크롬(Cr ⁺⁶) : 0.05mg/ℓ 이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계면활성제(SBS) : 0.5mg/ 이하							

비고 :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때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때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하수(Underground Water)

항 목		이용목적별	기 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일 반 오염물질 (5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6.0
	화학적산소요구량(COD)(mg/ℓ)		6이하	8이하	10이하
	대장균군수(MPN/100ml)		5,000이하	-	-
	질산성질소(mg/ℓ)		20이하	20이하	40이하
	염소이온(mg/ℓ)		250이하	250이하	500이하
특 정 유해물질 (10개)	카드뮴(mg/ℓ)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비소(mg/ℓ)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시안(mg/ℓ)		불 검 출	불 검 출	0.2이하
	수은(mg/ℓ)		불 검 출	불 검 출	불 검 출
	유기인(mg/ℓ)		불 검 출	불 검 출	0.2이하
	페놀(mg/ℓ)		0.005이하	0.005이하	0.01이하
	납(mg/ℓ)		0.1이하	0.1이하	0.2이하
	6가크롬(mg/ℓ)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ℓ)		0.03이하	0.03이하	0.06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ℓ)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비고 : 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경작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 해 역(Sea Area)

등급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mg/ℓ)	용 존 산소량 (DO) (mg/ℓ)	부 유 물질량 (SS) (mg/ℓ)	대장균 군수 (MPN/ 100ml)	노말핵 산추출 물질 (유분) (mg/ℓ)	총질 소(T -N)(mg/ℓ)	총 인 (T-P) (mg/ℓ)	무기물질 등 (mg/ℓ)
I	7.8 ~8.3	1이하	포화율 95이상	10이하	200이하	검출되 어서는 안됨	0.05 이상	0.007 이하	6가크롬(Cr ⁺⁶) : 0.05이하 비소(As) : 0.05이하 카드뮴(Cd) : 0.01이하 납(Pb) : 0.1이하
II	6.5 ~8.5	2이하	포화율 95이상	25이하	1,000이하	검출되 어서는 안됨	0.1 이하	0.015이하	아연(Zn) : 0.1이하 구리(Cu) : 0.02이하
III	6.5 ~8.5	4이하	포화율 80이상	-	-	-	0.2 이하	0.03이하	시안(CN) : 유기인, 수은 (HG) · 폴리크로리네이트드 비페닐(PCB) : 검출되어서 는 안됨

비고 : 1. DO : 농도로 표시하는 경우, 등급 I 은 6mg/ℓ, 등급 II와 등급 III은 5mg/ℓ 이상이어야 한다.

2. 등급 I 은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 II는 해수욕 등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등급 I 외의 수산생물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4. 등급 III는 공업용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 자료 :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II-1-3. 먹는물의 수질기준

(단위 : mg/l)

구 분	항 목	기 준	구 분	항 목	기 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2)	일반세균	1ml중100이하 50ml에서불검출	4.심미적 영 향 물질에 관 한 기 준 (16)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대장균군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2. 건강상 유해 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10)	납	0.05 이하		벤젠	0.01 이하
	불 소	1.5 이하		톨루엔	0.7 이하
	비 소	0.05 이하		에틸벤젠	0.3 이하
	세 레 늄	0.01 이하		크 실 렌	0.5 이하
	수 은	불검출		1.1-디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시 안	불검출		사염화탄소	0.002 이하
	암모니아성질소	0.5 이하		경 도	300 이하
	6가크롬	0.05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질산성질소	10 이하		냄 새	무취
	카드뮴	0.01 이하		맛	무미
3. 건강상 유해 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17)	다이아지논			동	1 이하
	말라티온			색 도	5도 이하
	파라티온			세 제	0.5 이하
	페니트로티온			수소이온농도	5.8~8.5
	카 바 릴			아 연	1 이하
	총트리할로메탄			염소이온	150 이하
	페 놀			증발잔류물	500 이하
	1.1.1트리클로로			철	0.3 이하
	에탄		망 간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탁 도	2도 이하	
총 항 목 수			45개		

* 자료 : 환경부, 상하수도국 음용수관리과

Ⅱ-1-4. 방류수 수질기준

□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l/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ml/l)	부유물질량 (SS)(ml/l)	기타 (ml/l)
하수종말처리시설	30이하	50이하	70이하	-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시설포함)	30이하	50이하	70이하	-

□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l/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ml/l)	부유물질량 (SS)(ml/l)	기타 (ml/l)
하수종말처리시설	20이하	40이하	20이하	총질소 : 60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오·폐수 종말처리시설포함)	30이하	40이하	30이하	총인 : 8이하

비고 : 1.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중 2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 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총질소 및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호소 등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자료 :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II-1-5. 폐수배출 허용기준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화학적산소요구량 · 부유물질량

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m ³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m ³ 미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l/l)	화학적산소요구량 (ml/l)	부유물질량 (ml/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l/l)	화학적산소요구량 (ml/l)	부유물질량 (ml/l)
지역구분	항 목						
청정지역	환경기준(수질) 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가지역	환경기준(수질) I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80이하	80이하	80이하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나지역	환경기준(수질) III,IV,V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특례지역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공단지	30이하	50이하	70이하	30이하	50이하	70이하

비고 :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 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 배수구역안에 위치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동 처리장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설계기준농도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수구역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능력이 배수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한다.

2. 폐수배출량은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이때 용수 사용량에는 수도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및 해수 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공정중 또는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기 전에 일정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물은 제외한다.

폐수배출량=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중 증발량·기타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중 발생량

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m ³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m ³ 미만		
지역구분	항 목	생물 화학	화학적	부유물	생물 화학	화학적	부유물
		적 산소요 구 량 (ml/ ℓ)	산소요구 량(ml/ℓ)	질량(ml /ℓ)	적 산소요 구 량 (ml/ ℓ)	산소요구 량(ml/ℓ)	질량(ml /ℓ)
청 정 지 역	환경기준(수질) 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 지 역	환경기준(수질) I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 지 역	환경기준(수질) III, IV, V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특 례 지 역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공단지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비고 :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 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 배수구역안에 위치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동 처리장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설계기준도도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자의 배수구역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능력이 배수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한다.

2. 폐수배출량은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이때 용수 사용량에는 수도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및 해수 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공정중 또는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기 전에 일정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물은 제외한다.

$$\text{폐수배출량} = \text{용수사용량} (\text{생활용수량} + \text{간접냉각수량} + \text{보일러용수량} + \text{제품함유수량} + \text{공정중증발량} \cdot \text{기타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양}) + \text{공정중 발생량}$$

□ 폐놀류 등 오염물질

항목 지역구분	수소이온농도 (pH)	노말핵산추출 물질함유량		페놀류 함유량 (mℓ/ℓ)	시안 함유량 (mℓ/ℓ)	크롬 함유량 (mℓ/ℓ)	용해성 철함유 량(mℓ/ ℓ)	아연 함유 량(mℓ/ ℓ)	구리(동) 함유량 (mℓ/ℓ)	카드뮴 함유량 (mℓ/ℓ)	수은 함유량 (mℓ/ℓ)	유기인 함유량 (mℓ/ℓ)	비소 함유량 (mℓ/ℓ)
		광유류 (mℓ/ℓ)	동식물 유지류 (mℓ/ℓ)										
청정	5.8 ~ 6.0	1이하	5이하	1이하 (1)이하	0.2이하	0.5이하	2이하	1이하	0.5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이하	0.1이하
가	5.8 ~ 6.0	5이하	30이하	5이하 (3)이하	1이하	2이하	10이하	5이하	3이하	0.1이하	0.005 이하	1이하	0.5이하
나	5.8 ~ 6.0	5이하	30이하	5이하 (3)이하	1이하	2이하	10이하	5이하	3이하	0.1이하	0.005 이하	1이하	0.5이하
특례	5.8 ~ 6.0	5이하	30이하	5이하 (3)이하	1이하	2이하	10이하	5이하	3이하	0.1이하	0.005 이하	1이하	0.5이하

항 목 지 역 구 분	납(연) 함유량 (mℓ/ℓ)	6가크 롬 함유량 (mℓ/ℓ)	용해성 망간 함유량 (mℓ/ℓ)	플루오 르(불소) 함유량 (mℓ/ℓ)	PCB 함유량 (mℓ/ℓ)	대장균 군수 (개/㎖)	색도 (도)	온도 (.C)	총질소 (mℓ/ℓ)	총인 (mℓ/ℓ)	트리클 로로 에틸렌 (mℓ/ℓ)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mℓ/ℓ)	음이온 계면 활성제 (mℓ/ℓ)
청 정	0.2이하	0.1이하	2이하	3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40이하	30이하	4이하	0.06이하	0.02 이하	3이하
가	1이하	0.5이하	10이하	15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나	1이하	0.5이하	10이하	15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00 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특 례	1이하	0.5이하	10이하	25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00 이하	40이하	60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5이하

- 비고 :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처리시설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기준농도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노말핵산추출물질 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류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3의 폐수배출시설중 카 섬유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위 1의 가, 또는 나의 기준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각란에 규정된 것과 같다.
5. 총질소·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 지역에 대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배출허용기준은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페놀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1993년 1월 1일부터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음이온계면활성제의 배출허용기준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II-1-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기준

지역	항목	구분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1일처리용량 100m ³ 미만	1일처리용량 100m ³ 이상 200m ³ 미만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특정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이상	-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l/l)	100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부유물질량(ml/l)	-	20이하	30이하	30이하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이상	-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l/l)	-	80이하	60이하	40이하	
	부유물질량(ml/l)	-	30이하	60이하	40이하	

* 토양침투처리방법에 의한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1차처리장치에 의해 부유물질이 55%이상 제거되고,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량이 250ml/l 이하로 한다.

*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ml/l 이하로 한다

비고 :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기준

구분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l/l)	부유물질량 (ml/l)	대장균군수 (개/l)	기타 (ml/l)
분뇨처리시설		30이하	30이하	3,000이하	총질소 : 120이하 총 인 : 16이하
축산폐수처리시설		30이하	30이하	-	총질소 : 120이하 총 인 : 16이하

- 비고 : 1. 총질소·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의 지역에 적용한다.
2. 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분뇨처리시설과 제6조제4호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기준

구 분	항 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l/l)	화학적 산소요구량 (ml/l)	부유물질량 (ml/l)	대장균군수 (개/l)	기타 (ml/l)
	분뇨처리시설	30이하	50이하	30이하	3,00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축산폐수처리시설	30이하	50이하	30이하	3,00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 비고 : 1., 총질소·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의 지역에 적용한다.
2. 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분뇨처리시설과 제6조제4호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가.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기준

지역	구 분	항 목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특정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l/l)	50이하	350이하
		부유물질량 (ml/l)	50이하	350이하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l/l)	150이하	500이하
		부유물질량 (ml/l)	150이하	500이하

*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특정지역내에 설치된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특정지역내에 설치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비고 :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동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수취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 자료 :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